#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1904 |
|---|---|

2017년 9월 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윤기 의원 외 11명

나. 제 안 일 : 2017년 6월 9일

다. 회 부 일 : 2017년 6월 13일

라. 상 정 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 가. 제안 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함.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음. 본 조례는 교육사무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

하여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교육부령)의 취지가 '교육경비의 보조'인 바, 조례의 내용을 바로 잡고,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로 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안 제명).

○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밝힘(안 제1조).

○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결과(2017.6.16.~ 6.23)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교육경비 보조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로 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 및 용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상위법[1]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육사무와 일반자치의 업무분장 및 서울시 교육지원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교육재정의 규모는 법정전출금(3조 3,939억원), 조례상전출금(비법정전출금, 567억), 학교급식(1,323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505억원), 교육협력사업(114억원), 직접수행사업(3억원), 주민참여예산(4억원), 도서관지원예산(110억원) 등 총 3조 6,567억원 수준(2017년 기준)이며,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현장에 지원되고 있어 획일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만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법정전출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2] 에 따른 전출금

※ 조례상전출금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5조제1항[3]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는 보조[4]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 '첨부1' 참조

3) '첨부2' 참조

4) '첨부3' 참조

## 나. 세부검토

### 1) 제명 및 용어 변경

○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명 및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5조~제11조, 제15조,제16조, 제17조)의 내용 중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 이는 「지방교육교부금법」과 「교육경비 보조규정」의 취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한다는 목적[5]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겠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조례의 목적 변경

○ 안 제1조는 교육재원 지원의 목적을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의 도모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에 관하여 교육청의 주도적인 추진과 서울시의 경비보조라는 교육사무와 자치사무를 분리한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다만, 개정안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교부금법」제11조제8항만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경비는 법정전출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과목으로 지원 및 보조하고 있는바, 법정전출금외 별도의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1조제9항에 관련된 사항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6)]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 3)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

○ 안 제3조제3항은 교육지원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지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7]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으로,

○ 교육청의 업무범위인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지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규정상 모호한 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및 급식설비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과도한 확대 해석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법제처의 해석 - 「교육경비 보조규정」제2조제6호 관련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는 (중략) 경비 보조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 재량은 무한정적인 재량이 아니라 같은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고(법제처 2006. 6. 7. 해석)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br>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br>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br>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br>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br>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br>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br>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br>**<신 설>**<br>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br>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 인재 양성사업<br>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br>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br>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br>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br>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③ ----------.<br>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br>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br>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br><삭 제><br>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br>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br>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br><삭 제><br>7. ---------- 필요하다고 ---------- |

### 4)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강행규정화

○ 안 제4조는 시장이 교육재원 지원방법을 모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교육재원 보조는 법정전출금, 조례상전출금 등이 교육청(법정전출금 등)·학교(교육기관에 대한보조 등), 자치구(자치단체경상보조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출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로만 전출하도록 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지방교육교부금법」[8]은 법정전출금 외의 경비를 지원할 때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교육재원 지원 방법에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강행규정으로 지원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6항[9]은 교육재정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둘째, 「교육경비 보조규정」[10]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서울시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셋째, 지원·보조 방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단일화할 경우, 조례상전출금에 속하지 않는 교육재원도, 본 조례의 조례상전출금의 규모인 '보통세의 1천분의 6이내'의 범위안에서만 지원해야 하는 바, 금번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 규모의 감소를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8)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 본 검토보고서 2페이지 각주 '5)' 참조

※ 안 제4조 규정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맞춰 예산 계상 방식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 근거법령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 법정전출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서울시의 교육관련 지원금 규모가 보통세의 1000분의 6으로 축소될 우려 있음.

· 안 제4조 후단에 “ 단,「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각급 학교로 직접 보조하는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교육지원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계 | 25,270 | 26,380 | 28,874 | 30,469 | 36,567 |
| 법정전출금 | 23,030 | 23,990 | 26,398 | 27,958 | 33,939 |
| 조례상전출금 | 1,912 | 418 | 405 | 417 | 567 |
| 무상급식 제외 전출금 | 580 | 418 | 405 | 417 | 567 |
| 무상급식 | 1,332 | - | - | - | - |
| 일반사업비 중 무상급식 | 0 | 1,490 | 1,432 | 1,368 | 1,323 |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 | **242** | **383** | **373** | **470** | **505** |
| 교육협력 사업* | - | - | 151 | 144 | 114 |
| 직접시행 사업* | 0 | 4 | 6 | 4 | 3 |
| 주민참여예산 | - | 4 | 13 | 3 | 4 |
| 도서관 지원현황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포함) | 86 | 92 | 96 | 104 | 110 |

※ 교육협력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조례상 전출금, 직접시행 사업 등 중복 예산 제외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에서 교육청도서관운영지원비, 무상급식비 제외

○ 안 제8조제1항(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제9조제1항(교육경비 지원대상의 장이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9조의2(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집행방법을 준수)는 보조한 경비를 교육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그 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가 허술했던바,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보조금의 합목적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적정한 개정사항이라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례의 근거를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축소를 방지하며, 조례 조문상 일관성을 고려함.

나. 주요내용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추가함(안 제1조).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방법을 반영함(안 제4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안 번호 | 관 련 1904 |
|---|---|

제안년월일 : 2017년 8월 3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례의 근거를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축소를 방지하며, 조례 조문상 일관성을 고려함.

## 2. 주요내용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추가함(안 제1조).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방법을 반영함(안 제4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8항 및”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제목 중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다”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지원”을 “보조”로 한다.

안 제6조 중 “자치구”를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6조의2 중 “세입수입”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각급”을 삭제하고, “학교의 장”을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을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안 제9조의2제1호 중 “관한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랍”을 “사립”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교육지원을”을 “교육경비 보조를”로 한다.

안 제16조의2제1항 중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을 “보조규모와 보조대상”으로 한다.

안 제17조 중 “교육지원계획수립”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 제 2 조 ( 적 용 범 위 ) ---------- ---------- ---------- ---------- ---------- ----------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개정안과 같음) |
|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 |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 |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개정안과 같음) |

| | | |
|---|---|---|
|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조에 관한 기본계획----------. | |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②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 ② (개정안과 같음) |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1. (개정안과 같음) |
| **<신 설>** |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 (개정안과 같음) |
|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 3. (개정안과 같음) |
|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 <삭 제> | (개정안과 같음) |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4. (개정안과 같음) |
|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 |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5. (개정안과 같음) |

| | | |
|---|---|---|
| 사업 | | |
|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6. (개정안과 같음) |
|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 <삭 제> | (개정안과 같음) |
|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7. (개정안과 같음)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④·⑤ (개정안과 같음) |
|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의 계상) ----------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다. |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
|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 |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 교육경비 보조금---------- |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개정안과 같음) |

| | | |
|---|---|---|
| 른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 | |
|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 | ② (개정안과 같음) |
|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 --- 교육경비 보조 --- ----------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 ----------. | ③ (개정안과 같음) |
|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 ④ 교육경비 보조금---- ----------. | ④ (개정안과 같음) |
|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 |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 ---------- ---------- |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 ----- ---------- ---------- |

| | | |
|---|---|---|
| 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교육감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있다. 이 경우----------. | ----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그 소요경비의----------있다. 이 경우----------. |
| <신 설> |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개정안과 같음) |
| |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 1. (개정안과 같음) |
| |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 제7조 (**지원신청**) ①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

| | |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신 설>** | ③ 시장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
| **<신 설>** |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교육경비 보조사업 ---------- ---------- ---------- 보조금----------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1. ~ 3. (개정안과 같음) |
|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4. ---------- 허위사실 ---------- | 4. (개정안과 같음) |
|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신 설> |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 ① 교육경비 **지원**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 교육경비 보조사업---------- ----------. | ② (개정안과 같음) |
|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 교육경비 보조사업---------- ----------. | ③ (개정안과 같음) |
| <신 설> |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 |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개정안과 같음) |

| | | |
|---|---|---|
| | 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
| |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한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 |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 ----------. |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개정안과 같음) |
|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안과 같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1. (개정안과 같음) |
|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 | 2. 교육경비 보조사업 | 2. (개정안과 같음) |

| | | |
|---|---|---|
| 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 ------- 교육경비 보조사업 -- | |
|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 | 3. (개정안과 같음) |
| 4. 교육지원사업 평가 | 4. 교육경비 보조사업 -- | 4. (개정안과 같음)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5. (개정안과 같음) |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 ---------- ---------- 서울특별시 교육청 ---------- ---------- ---------- ----------.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
|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 ---------- ---------- ---------- ---------- ----------. |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개정안과 같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1. (개정안과 같음) |
|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 | 2. ---------- 교육경비 보조사업 | 2. (개정안과 같음) |

| | | |
|---|---|---|
| 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 ---------- | |
|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3. ---------- 말한다. 이하 ---------- | 3. (개정안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
|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 |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 |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교육경비 보조사업---------- --------. | ② (개정안과 같음) |
|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 ---------- ----. |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 ------.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 조 제목 중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며, 제1항 중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중 “지원”을 “보조”로, “시교육비특별회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의 조 제목 중 “(교육지원금의 재원 등)”을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은”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으로,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로,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을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

금”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지원”을 “보조”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를 “교육감 및 구청장”으로 하고,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의 조제목 “(지원신청)”을 “(보조금 신청)”으로 하고, 제1항 중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보조”로 하고, “교육지원대상”을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조제목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여 본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

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교육지원에”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로,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사업별”을 “교육경비 보조사업별”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청”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말한다.이하”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지원을”을 “교육경비 보조를”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교육지원계획수립”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으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각급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
|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

| | |
|---|---|
| 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br><신 설> |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 |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
| | <삭 제> |

| | |
|---|---|
| 인재 양성사업 | |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 조성사업 |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
|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 <삭 제> |
|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 |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 |

| | |
|---|---|
| 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
|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
|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
|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신 설> |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br>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br>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 | |
|---|---|
| 제7조 (**지원신청**) ①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신 설> |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신 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 |

| | |
|---|---|
| | 지 아니하다. |
|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신 설> | |
|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

| | |
|---|---|
| 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br>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br>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
|---|---|
|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
|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 4. **교육지원사업** 평가 |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 (생 략) |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
|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
|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 |

| | |
|---|---|
|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